

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사항

- 의무사관후보생 포기·취소 가능 여부
 -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*되면, 「병역법시행령」 제120조에 따라 **의무사관후보생 취소·포기 불가** * 병적편입 : '23. 5. 1.
- 제한연령 33세까지 수련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및 수련기관 퇴직(레지던트 미승급 포함) 등 수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가까운 입영기일에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입영하여야 함
- 수련과정 중단 시에는 재채용 등의 사유로 수련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
- 군별·역종별 분류 과정 안내
 - 과정 수료자, 수련 중단자, 레지던트 미승급자 등은 군별·역종별 분류 과정을 거쳐 **장교(군의원)**,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입영
- 장교 임용 결격사유 해당자 조치
 - 군인사법 제10조의 장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무사관 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, 현역병 또는 사회복지무요원으로 의무부과 됨
-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 변경
 -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임의 변경한 경우 가까운 입영기일에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입영하여야 함

2023. . .

병 무 청 장